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참 고 자 료	보다 나은 정부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9. 10. 12. (토)	담당부서	통상분쟁대응과
담당과장	정하늘 과장(044-203-4880)	담 당 자	김효중 사무관(044-203-4887)

WTO 일본 수출제한조치 분쟁, 양자협의 결과

□ 한·일 양국은 일본 수출제한조치 WTO 분쟁(DS590)의 첫 번째 양자 협의를 10월 11일 제네바에서 개최함.

○ 이번 협의는 WTO 분쟁해결양해(DSU) 제4.3조에 근거하여 개최되는 WTO 분쟁의 첫 번째 단계로서, 우리측은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, 일측은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통상체제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

□ 우리측은 일측 조치의 부당성과 WTO 비합치성에 대해서 지적하고, 일측이 수출제한조치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함.

○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에 사용되는 3개 물질*에 대한 일본의 차별적이고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는 WTO 상품무역협정(GATT), 서비스협정(GATS),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(TRIPS),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(TRIMS) 등에 위배됨을 지적하였음.

* ① 플루오린 폴리이미드, ② 포토레지스트, ③ 불화수소

○ 또한, 우리측은 일측이 그간 제시한 조치 사유*들은 구체적 근거가 없으며,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들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설명함.

* ① 전략물자 주요 공급국으로서의 책임, ② 일부 수입상의 납기독촉 사례 발생, ③ 일본 수출기업의 부적절 수출관리 발생, ④ 재래식 무기 캐치올 제도 미흡

□ 양측은 앞으로도 협의를 계속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, 외교채널을 통해 2차 협의 일정을 정하기로 합의하였음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 김효중 사무관(☎ 044-203-488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 우리측 양자협의요청서 주요 내용

□ **(제소대상) 3개 품목**(① 플루오린 폴리이미드, ② 포토레지스트, ③ 불화수소)에 대한 **일본**의 **對韓 수출제한조치**

○ 일본은 **3개 품목**의 **對韓 수출**시 **포괄허가제**를 **개별허가제**로 **변경 공표**(7.1)·**시행**(7.4~)

□ **(법적근거)** **(상품)** GATT 1조·11조·10조 등
(기술) TRIMS 2조, GATS 6조, TRIPS 3·4·28조

【 양자협의요청서 주요 내용 】

일본 조치	• 3개 품목 및 관련 기술이전시, – 기존 포괄허가 사용 불가(7.4일자로 효력 소멸) – 개별허가 신청 의무화 – 日 경제산업성 본청에서만 개별허가 접수 (지역 심사국에 신청 불가) – 개별허가 관련 복잡한 수출절차 의무화
주요 위반근거	• 3개 품목 수출규제 관련, –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(GATT) 제1조·제11조·제10조 등 – 무역원활화협정(TFA) 제2조·제6조·제7조·제8조·제10조 등
	• 3개 품목에 관한 기술이전 규제 관련, –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(TRIMs) 제2조 –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(TRIPS) 제3조·제4조·제28조 –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(GATS) 제6조

붙임 2 WTO 분쟁절차도

